

1. 개정이유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 등에게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

(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제67조제1항 별표 12)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또는 말소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개시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및 교육시기 규정(안 제50조·제52조)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구체화: (신규선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변경선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 구체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정기검사 도래일 산정 기준의 합리화(안 제54조)

- 검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정밀검사(최초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를 받은 경우 직전 검사에 따른 도래일을 정기검사 도래일로 적용 등

라. 승강기 수시검사 제외 대상 추가(안 제55조)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정비(안 제73조 별표 13)

-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에 자체점검 실무 교육과정(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신설

바. 승강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범위 규정(안 제69조)

- (관리주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
- (이용자)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고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를 설치(제3조에 따른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려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9조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에는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제54조제2항제1호 중 “6개월”을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6개월”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차기 정기검사에 한하여 1년

제5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을 30일 초과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4조제6항(중전의 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을 “다음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1.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 수시검사를 받은 날
2.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
3. 법 제32조제1항제3호 후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 직전 검사에 따른 검사주기 도래일

제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각목에 따른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6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또는 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료 요청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공문서를 자료 요청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별표 12에서 별표 13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3호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3) 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라.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 제조·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		1개월	2개월	3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등록취소	—	—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등록취소	—	—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법 제9조제1항 제6호	경고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등록취소	—	—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 제9조제1항 제7호	등록취소	—	—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 소한 경우				
아.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 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9조제1항 제8호	6 개 월 이 내 사 업 개 시 명 령	등록취소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
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
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
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併科)한다.
-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등록취소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3개월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사업 일부정지 3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보완명령	사업 일부정지 1개월	사업 일부정지 2개월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이하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2개월	사업 일부정지 4개월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5호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업 전부정지 4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사업 전부정지	등록취소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3개월 등록취소	6개월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6호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 하인 경우		보완명령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 과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사업 전부정지 4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등록취소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 피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7호	사업 전부정지 2개월	등록취소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8호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3개월	사업 전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경고	사업 전부정지 1개월	사업 전부정지 2개월
자.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9호	등록취소	—	—
차.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 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년 이 상 휴업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10호	6개월 이내 사업개시 명령	등록취소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교육

교육 내용	교육시간
가. 승강기 설계이론 나.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다. 승강기 설치공법 라.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마.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바.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8시간

2. 직무교육

교육 내용	교육시간
가. 부품안전인증 실무 나.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다. 설치검사 실무 라. 자체점검 실무(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마. 안전검사 실무 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 사.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아. 승강기 관계법령 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 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28시간

비고

기술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의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 선임 [] 변경 통보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통보인	건물명(상호)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승강기([]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 피난용 엘리베이터, [] 기타) 소재지			
승강기 안전 관리자 현황	기존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해임 또는 교체일	
	선임 ·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 또는 변경일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 (받은 경우만 기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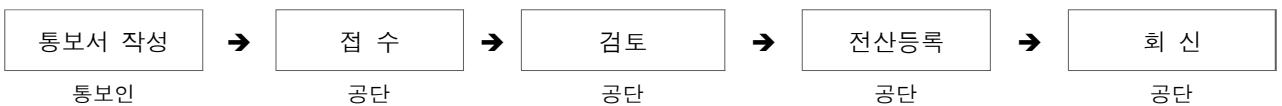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서류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빈칸으로 둔 채 "선임·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변경"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 통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u>별지 제24호서식</u> 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u>별지 제24호서식</u> ----- ----- ----- ----- ----- ----- -----.
<u><신 설></u>	1. <u>승강기를 설치(제3조에 따른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려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u>
<u><신 설></u>	2. <u>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u>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생략) ② <u>승강기관리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u>	제52조(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29조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검사일 또는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u> 2. <u>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에는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u>
③ ~ ⑤ (생략)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u>6개월 <단서 신설></u>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u>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6개월. 다만, 수시</u>

2. ~ 4. (생략)

③·④ (생략)

<신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이하 “정밀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차기 정기검사에 한하여 1년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을 30일 초과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

-- 다음 각 호에 따른 -----
-----.

1.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 수시검사를 받은 날

<u><신 설></u>	2.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나 목 또는 라목에 따른 정밀안 전검사 :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
<u><신 설></u>	3. 법 제32조제1항제3호 후단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정밀 안전검사 : 직전 검사에 따른 검사주기 도래일
⑥ (생 략)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생 략) <u><신 설></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5조(수시검사의 제외 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각목에 따른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 제3 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 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 사를 제외할 수 있다.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69조(사고 보고 및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 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4항 후 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관리주체 또는 이 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 발생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

<u><신 설></u> ④ (생 략)	<u>CTV) 영상정보</u> <u>2.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의사</u> <u>의 진단서(중대한 사고 또는</u> <u>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날부터</u> <u>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u> <u>초 진단결과로 한정한다)</u> ⑤ 제4항에 따른 각 호의 자료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u>정당한</u> <u>자료 요청 권한이 있음을 증명</u> <u>하는 신분증 또는 공문서를 자</u> <u>료 요청자에게 제시하여야 한</u> <u>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	---